

#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중요 논의에 관한 재 고찰\*

A Study on the important issues of Documents Examination in the L/C Transactions

김용일(Yong-Il Kim)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서류심사의 일반 원칙       | 참고문헌     |
| III.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      | ABSTRACT |
| IV. 서류 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 |          |

## 국문초록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충분성·정확성·진정성·위조 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서류 심사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2013년 발행된 ISBP745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주제어** : 신용장통일규칙600, 국제표준은행관행745, 서류심사 의무, 엄격일치의 원칙.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교통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I. 서론

신용장은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 같은 기초거래에 의하여 개설되지만, 기초거래와는 독립적이다. 이를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의 독립성(Independence Principle)이라고 하며, 서류거래의 원칙과 함께 신용장거래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비록 신용장이나 조건변경에서 그 기초거래를 명시하더라도 신용장 개설은행은 기초거래의 이행여부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는 신용장거래가 매매나 다른 계약의 내용에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은행의 서류심사 시 거래에 대한 전문성 문제, 처리비용과 시간문제, 잠재적 분쟁가능성 등이 발생하며, ‘지급수단’이라는 신용장거래의 장점이 훼손되고 신용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결국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 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충분성·정확성·진정성·위조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심사의 중요 논의에 관하여 고찰하는바,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o. 600) (이하 ‘UCP 600’이라 한다)과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SBP Publication No.745, 이하 ISBP745라 함), Banking Committee의 견해 및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은행의 서류심사 기준과 요건, 서류심사표준과 불일치서류 제시에 따른 효과, 사기의 문제 및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sup>1)</sup>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에 관하여, 본 논문은 은행의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과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를 중심으로 UCP600 규정(UCP500과의 비교)의 해석은 물론 최근 발행된 ISBP745(2013년)와 다수의 외국판례를 분석·고찰함으로써 실무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사전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1) 박세운 “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pp.275-295; 김용일,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6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11, pp.47-66; 이천수,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의 거절통지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pp.709-725; 채동현,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하에서 운송서류에 대한 심사”, 『국제거래법연구』, 제17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8, pp.121-157; 김종철,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물품명세의 일치성 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pp.239-261; 한재필, “UCP600에서의 서류심사표준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pp.196-198; 강원진, “UCP600 상의 불일치서류의 권리포기 요건과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7, pp.1-17.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문면일치의 원칙, 엄격일치의 원칙 및 서류 간 일관성을 중심으로 서류심사의 일반원칙을 살펴보고(II), 실무에서 은행원들이 서류심사 시 고려할 사항들을 검토한 후에(III), 나아가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에 대해 불일치서류의 거절, 거절통지 및 실권효를 고찰하면서 판례의 해석과 함께 실무상의 유의점을 제시한다(IV).

## II. 서류심사의 일반 원칙

### 1. 문면일치의 원칙

신용장상의 서류가 제시되면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개설은행은 제시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 UCP600 제14조 a항은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개설은행은 제시에 대하여 심사하여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 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조에서는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 관하여 “일치하는 제시는 신용장 조건, UCP600의 적용 가능한 규정<sup>2)</sup> 및 국제표준은행관행<sup>3)</sup>에 따른 제시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만약 제시서류가 UCP600 제2조에 따른 일치하는 제시임이 확인되면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있는 경우)은 각각 신용장상의 자신의 결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sup>4)</sup>, 지정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를 확인은행이나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sup>5)</sup>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 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계약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충분성·정확성·진정성·위조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sup>6)</sup> 심지어 서류가 위조임이 밝혀졌을 경우에도 문면 상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고 개설의뢰인을 상대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sup>7)</sup> 또

2) 여기서 적용 가능한 규정이란, 신용장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관련 거래와 연관된 UCP규정들을 말한다.

3) 이는 고유명사인 ISBP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현재 시행중인 은행관련 규칙들과 관행들을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4) UCP600 제2조의 “결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신용장이 일람지급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에 일람지급하는 것. (b) 신용장이 연지급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에 연지급을 확약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c) 신용장이 인수에 의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에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하는 것.

5) UCP600 제15조 c항.

6) UCP600 제34조.

7) *Gian Singh & Co Ltd v Banque de L'Indochine* [1974] 2 Lloyd's Rep 1, 11; *Standard Chartered Bank v Beam Technology(Mfg)Pte Ltd* [2003] 1 SLR 597.

한 은행은 어떤 서류에 나타난 물품, 서비스 또는 다른 의무이행에 관한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액 또는 존재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sup>8)</sup> 즉 은행은 기초계약의 위반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설령 수익자의 계약위반이 있었거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을 하여야 한다.<sup>9)</sup> 이와 같이 은행의 서류심사 의무를 문면 상 일치로 제한한 것은 UCP600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UCP500 제13조 a항의 규정과는 달리 UCP600에는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UCP600의 서류심사기준이 UCP500 제13조 a항보다 더 엄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심사가 필요하다.<sup>10)</sup> 여기서 합리적인 심사는 사실의 문제이며, 만약 합리적으로 능숙한 은행원이 심사하였다면 그는 서류의 모든 불일치를 발견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은행에서 통상 전문가증명서(expert evidence)를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목적에서이다.<sup>11)</sup> 개설은행이 합리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데 대한 입증책임은 개설의뢰인이 부담한다. 만약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 일치하는 제시가 아님에도 대금 지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개설의뢰인이나 개설은행(관련된 경우)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게 된다.<sup>12)</sup> 마찬가지로, 일치하는 제시가 아님에도 결제 또는 매입한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게 된다.<sup>13)</sup>

서류심사 은행원은 신용장거래와 관련된 기초계약이나 무역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않으며 신용장에서 왜 이러한 서류들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Commercial Banking Co of Sydney v Jalsard Pty Ltd* 사건에서 Diplock경은 “은행원은 은행이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들의 상업적 목적이나 개설의뢰인의 서류심사 의뢰목적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만약 개설의뢰인이 어떠한 서류를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요청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였거나 그러한 요청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그에 따라 어떠한 서류를 수리하였다면 이는 은행의 과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sup>14)</sup> 즉 신용장조건이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위험은 개설의뢰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8) Ibid.

9) *United City Merchants(Investment) Ltd v Royal Bank of Canada* [1983] 1 AC 168, 183.

10) J.E. Byrne, *The Comparison of UCP600 & UCP500*,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07; P. Ellinger,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their development and the correct revisions* [2007]LMCLQ 152.

11) *Standard Chartered Bank v Korea Exchange Bank* [2005] SGHC 71.

12) 이는 무과실책임으로, 이러한 은행은 개설의뢰인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13) UCP600 제7조 c항, 제8조 c항. 이는 합리적인 심사가 있었다면 모든 불일치는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 결과이다.

14) *Commercial Banking Co of Sydney v Jalsard Pty Ltd* [1973] AC 279, 286.

심사은행은 독립성을 가지고 심사하여야 하며, 자신의 고객인 개설의뢰인을 편애하거나 그의 어떠한 상업목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컨대 물품의 가격이 폭락하여 개설의뢰인이 물품의 구매와 대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게 되어 은행으로 하여금 불일치를 주장하면서 서류를 거절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이다.<sup>15)</sup> 또한 제시된 서류가 수리적 계산을 표시하는 경우에 은행은 단지 금액이나 수량, 중량, 포장의 개수와 같은 수치에 관하여 기재된 總計가 신용장이나 명시된 다른 서류와 저촉하는지 여부만을 결정한다.<sup>16)</sup> 어떠한 수리적 계산을 포함함으로써 그로인하여 불일치가 주장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수리적 계산은 은행에 제시되는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sup>17)</sup> 즉, 수리적 계산은 서류의 합리적인 심사의 범위 밖에 있다. 나아가 제시되었으나 신용장에서 요구되지 아니한 서류는 무시되고 제시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sup>18)</sup> 이러한 주장은 은행이 기타 서류에 대하여는 거절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성립된다. 신용장에 기재된 서류들 중 제시서류라고 명시를 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도 제시가 필요한지는 해석의 문제이다.<sup>19)</sup>

## 2. 엄격일치의 원칙

제시서류는 신용장조건과 반드시 엄격히 일치(strict compliance)하여야 하며, 상당히 일치하거나 신용장조건과 그 역할 면에서 동등하면 된다는 등의 융통성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판례인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s Ltd* 사건에서 Viscount 판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은 제시서류가 신용장상의 요구조건과 엄격히 일치한 경우에만 그것을 수리하고 상환청구를 하며, 제시서류의 일치여부에 대하여 ‘거의 같다’거나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 엄격일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거래가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는 거래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은행의 해외지점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제시서류에 대하여 엄격일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심사한다면 거래는 안전하게 진행되겠지만, 만약 은행이 신용장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해준다면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sup>20)</sup> 이는 제시된 서류는 반드시 신용장의 요구조건과 엄격히 일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15) *Credit Agricole Indosuez v Muslim Commercial Bank Ltd* [2000] 1 Lloyd's Rep 275, 279-80;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2006] 1 Singapore Law Review 565.

16) ISBP745 A22.

17) *Credit Industriel et Commercial v China Merchants Bank* [2002] 2 All ER 427.

18) UCP600 제14조 g항.

19) P. Ellinger & D.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Oxford & Portland, 2010, pp.224-227.

20) *Equitable Trust Co of New York v Dawson Partners Ltd* [1926] 27 Lloyd's Rep 49, 52.

엄격일치의 원칙은 많은 판례에서 강조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UCP의 여러 버전에서도 모두 이를 규정하고 있다. UCP600 제2조에서는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신용장조건, 이 규칙상의 적용 가능한 규정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른 제시”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은행원은 UCP600뿐만 아니라 ISBP745에 근거하여서도 제시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거래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을 심사할 필요는 없다.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충분성·정확성·진정성·위조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sup>21)</sup>

다만, 엄격일치라 하더라도 신용장조건과 사소한 또는 실질적이지 않은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불일치로 보지 않으며, 모든 기재가 반드시 엄격하고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자(misspellings)나 오타(typing error)가 있다고 해서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자여부는 오자나 오타로 인해 이들이 들어 있는 단어나 문장에서 의미변화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서류에 오타가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UCP600 제14조 제d항의 위반은 아니다.<sup>22)</sup> 하지만 법원은 어떤 것이 무시해도 되는 사소한 오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하기를 꺼린다. 왜냐하면 엄격일치의 기준은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23)</sup> 법원은 서류심사 시 불일치 여부를 판단할 때, 오타자가 바로 인지되는지, 숫자나 단어의 오기로 인하여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지, 오기한 내용이 당사자의 이름인지,<sup>24)</sup> 서류 중 어떠한 내용의 오타자인지, 오기로 인하여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는지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신용장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하였다면, 예컨대 신용장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거나 매수인의 상호를 명기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면 그러한 요구의 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원은 그것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sup>25)</sup>

나아가 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는 반드시 모두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두 가지 서류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단수의 서류나 두 가지 서류의 데이터를 모두 포함한 단수의 서류는 그 두 가지 서류를 제시한 것과 같다고 보지 아니한다. 그러한 단수의 서류가

21) *Indian Overseas Banks v United Coconut Oil Mills Inc* [1993] 1 SLR 141,151; *Kumagai-Zenecon Construction Pte Ltd(in Liq) v Arab Bank plc* [1997] 3 SLR 141, 150-51.

22) ISBP745 A23. 예컨대 “machine” 대신에 “mashine”, “fountain pen” 대신에 “fountan pen”, “model” 대신에 “modle”을 사용한 경우는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보의 저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model 321” 대신에 “model 123”이라고 표시한다면 다른 모델이 되어 의미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보의 저촉이 된다. 박세운·허해관,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745 -공식 번역 및 실무가이드-』, 대한상공회의소, 2013, p.61 참조.

23) *Seaconsar Far East Ltd v Bank Markazi Jomhourī Islami Iran* [1993] 1 Lloyd’s Rep 236, 240; *Kredietbank Antweke v Midland Bank plc* [1999] Lloyd’s Banking Rep 219, 223.

24) ‘Sofan’을 ‘Sorān’으로 기재한 것을 불일치로 본 사건 및 ‘Smith’를 ‘Smith’로 기재한 것을 수리한 사건(R. Jack & A. Malek, *Documentary Credits*, 3<sup>rd</sup> edn(UK, Tottel Publishing, 2001) p.188, *Beyene v Irving Trust Co* 762 F 2d 4).

25) *Seaconsar Far East Ltd v Bank Markazi Jomhourī Islami Iran* [1993] 1 Lloyd’s Rep 236, 240; P. Downes, “UCP600: not so strict compliance,”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Vol.22, No.4, 2007, pp.196-198 참조.

제시되었을 경우 은행은 불일치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sup>26)</sup> 서류가 신용장의 특정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서류의 제목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류가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자명한 이치이며, 이 역시 UCP600 제2조의 일치하는 제시에 포함된다. 만약 신용장상 유효기일 이전에 서류를 어느 특정장소(통상 지정은행의 창구)에 제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서류가 유효기일 이전에 반드시 그 장소에 제시되어야만 일치하는 제시가 된다.<sup>27)</sup>

### 3. 서류간 일관성

엄격일치의 원칙의 특별한 측면으로, 제시서류들은 문면 상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UCP600에는 서류 간 일관성에 대하여 어떤 범위까지 허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관해 UCP500 제13조 a항은 “서류 상호간에 문면 상으로 모순되게 표시된 서류는 신용장의 제 조건과 문면상 불일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ICC Banking Commission에서도 서류의 일관성에 대해 “제시된 모든 서류들은 반드시 같은 거래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각 서류는 다른 서류들과 문면 상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불일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동 원칙은 물품명세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UCP500 제37조 c항은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상의 그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기타 모든 서류상의 물품은 신용장상의 물품명세와 모순되지 아니한 일반용어로 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요컨대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반드시 신용장상 물품명세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서류상의 물품명세는 상업송장보다는 덜 엄격한 일관성을 요구한다.<sup>28)</sup> 반면 상업송장 상에 신용장에는 없는 원산지 제한 문구가 추가되었다면, 특히 그로 인하여 물품명세가 애매모호하게 되었다면 이는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sup>29)</sup> 수익자에게 가장 안전한 표시방법은 당연히 신용장상 물품명세와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되며 동일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일한 뜻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해석을 포함하면 된다.<sup>30)</sup>

26) ISBP745 A40. 예컨대 포장명세서 원본 1부 및 증량명세서 원본 1부를 요구하는 조건은 포장 및 증량의 세부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하나의 결합문서인 포장 및 증량명세서 원본 2부를 제시함으로써 충족된다.

27) 엄격일치의 원칙에 관한 국내 법원의 입장에 관하여 상세히는, 채동현,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하에서 운송서류에 대한 심사”, 『국제거래법연구』, 제17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8, pp.123-125 참조.

28) ‘ex Berger Pilot’와 ‘previous name Berger Pilot’를 같은 의미로 본 사건(Astro Exito Navegacion SA V Chase Manhattan Bank NA(The Messiniaki Tolmi) [1986] 1 Lloyd’s Rep 455, 458).

29) 하지만 상업송장상 원산지증명에 대하여 기재할 때 “Indonesia(Inalum Brand)”에 추가로 “any Western Brand”라고 기재된 것에 대하여 일치하는 제시로 본 사건도 있다.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1996] 1 Lloyd’s Rep 135, 142-43.

30) Kydon Compania Naviera Co v National Westminster Bank Ltd(The Lena) [1981] 1 Lloyd’s Rep 68, 76.

즉, ‘일치하는(corresponds) 물품명세’는 ‘동일한(identical) 물품명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sup>31)</sup>

상업송장 이외의 다른 서류들에 관해서는 UCP500 제2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운송서류, 보험서류 및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은 그러한 서류의 발행인과 서류상의 문언 또는 기재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신용장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은행은 그러한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의 기재내용은 제시된 그 밖의 모든 규정된 서류와 모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UCP600에는 서류 간 일관성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위의 규정이 UCP600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만약 유효하다면 어떠한 범위까지 일관되어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이에 대해 UCP600 제14조 d항은 “서류상의 정보는 이를 신용장, 그 서류 자체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습)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그 서류나 다른 명시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서류 간 일치의 원칙에서 벗어나 (i) 서류상의 정보 및 (ii) 서류상의 정보는 그 서류나 다른 명시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물론 이러한 정보는 서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즉 서류가 아니라 서류상 정보의 비교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제14조 d항에 따르면 그러한 정보들 간에 상충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신용장과 기타 제시서류들 및 ISBP를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ICC Banking Commission에서도 아직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상충되지 않다(not conflict with)’와 ‘일관되지 않지 않다(not inconsistent)’는 다른 뜻을 가진다.<sup>32)</sup> 즉 모든 정보의 일관되지 않음이 상충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오직 실질적인 불일치만 고려하면 되는데, 예컨대 동일 거래에 관련된 서류나 정보가 아니거나 아닐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이에 대해 UCP600 제14조 e항은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서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에 관한 명세는, 만약 기재되는 경우에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상충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를 규정한다. UCP500 제37조 c항과 같이 본 조항에서도 역시 ‘일관되지 않지 않다’와 ‘상충되지 않다’의 차이를 중요시해야 한다. 상업송장상의 물품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상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UCP600에 남아있다.<sup>33)</sup>

31) C. del Busto, *Documentary Credits, UCP500 &400 Compared*, ICC Publication no 511 (Paris, ICC, 1993), p.100에서 저자는 상당일치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수설에 불과하다. 즉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단어의 사용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당일치의 원칙이 아니라 엄격일치 원칙의 예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2) J.E. Byrne, *op. cit.*, p.136.

33) UCP600 제18조 c항.

### Ⅲ. 서류심사 시 고려사항

#### 1. 원본·사본·서명

##### 1) 원본

신용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서류는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UCP500 제20조 b항<sup>34)</sup>에서 규정하는 원본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혼란스럽다. 먼저 ICC Banking Commission에서는 ‘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500 Sub-Article 20(b)<sup>35)</sup>’라는 Policy Statement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현재 UCP600 제17조 원본과 사본을 다룬 조항에 요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사건<sup>36)</sup>과 *Kreditbank Antwerp v Midland Bank plc* 사건<sup>37)</sup>에서 원본의 판단여부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먼저 UCP500 제20조 b항의 전제는 은행이 복사, 자동화 또는 전산화된 시스템 또는 복사지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작성된 것으로 보여 지는 서류가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Glencore International AG* 사건<sup>38)</sup>에서 수기서명이 된 컴퓨터 프린트된 증명서의 백지용지 사진 복사본은 원본(original)이라는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원본이라는 표시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sup>39)40)</sup>

다음으로 *Kreditbank Antwerp* 사건을 보면, 문제의 서류는 보험증권 원본 1부와 부분(duplicate) 1부였다. 보험증권 원본은 회사의 상호와 로고가 상단에 은화(隱畫, watermarked)되어있는 전용지에 인쇄되었고, 부분은 원본의 사진 복사본으로 위의 은화까지 포함하고 있었

34) UCP500 제20조 제b항: 신용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거나 또는 작성된 것으로 표시된 서류도 이를 역시 하나의 원본서류로서 수리하여야 한다. i. 복사기기, 자동기기 또는 전산기기에 의하거나, ii. 카본 복사에 의한 것. 다만 이들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가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서류는 육필, 모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부호, 또는 기타 모든 기계방식 또는 전자방식의 인증에 의하여 서명될 수 있다.

35) UCP500 제20조 b항상 ‘원본’서류에 관한 정책성명서.

36)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1996] 1 Lloyd’s Rep 135.

37) *Kreditbank Antwerp v Midland Bank plc* [1999] 1 Lloyd’s Rep Bank 219.

38)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1996] 1 Lloyd’s Rep 135, 153.

39) 강원진, 『신용장 분쟁사례』, 두남출판사, 2013. p.264,

40)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육필이나 타이핑 된 서류에는 원본표시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밝혔으며, 이는 제20조 b항에서 “역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형태의 원본서류 가능성을 보장받는다. R. Jack & A. Malek, op. cit., pp.201-202; J. E. Byrne, *The Originals Controversy: From Glencore to an ICC Decis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1999) 참조.

다. 원본과 부분 모두에 서명이 되어 있었지만 원본에는 ‘원본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항소법원은 앞의 **Bank of China**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류에 원본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제20조 b항의 요구는 보험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sup>41)</sup> 제20조 b항의 전신인 UCP400 제22조 c항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본 조항은 원본으로 인정되지 못하여 거절되어야 하는 서류(예컨대 카본복사나 사진 복사본, 즉 복제된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책으로서 ‘원본’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른 서류를 복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자동화 또는 전산화 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는 원본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위 조항은 이러한 서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원본 보험증권은 회사의 상호와 로고가 상단에 은화되어 있는 전용지에 인쇄되었으며 서명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서류를 복사한 것은 분명히 아니며, 이에 ‘원본’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원본으로서 수리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sup>42)</sup>

두 판례가 있는 후 1999년 7월 12일에 ICC Banking Commission에서는 Policy Statement를 제정하여 ‘원본’으로 분류되는 서류들을 분명히 구분하였다. 이 Statement에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은 은행은 서류가 사실상 원본인지(UCP500 제15조에 따라)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며 오직 외형상으로 사본과 구분되는 원본이 맞는지만 검토하면 된다. 즉 서명이 존재(필요)하는 서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명부분이고, 검사증명서와 같은 증명서에 있어서, 발행자의 서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여러 가지 서명방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복사기로 서명을 복사(photocopy)하는 방법에 의한 서명’은 UCP나 ISBP에서 인정되는 형태의 서명이 아니고, 서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원본’이라고 표시하였다하여 ‘원본’서류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sup>43)44)</sup>

## 2) 사본

UCP500에서와 마찬가지로 UCP600에도 사본에 대한 정의가 없다. 결국 Policy Statement와 ISBP745의 규정으로부터 이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밖에 없다. Policy Statement에는 원본으로 취급되지 못하는 서류들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제17조 b항과 c항에 포함되지 못하는 telefax로 작성된 서류나 사진 복사본 또한 사본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단 하나의 원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는 사본으로 취급된다. 서명된 서류를 사진 복사하였거나 fax로 전송하였을

41) *Kreditbank Antwerp v Midland Bank plc* [1999] 1 Lloyd's Rep Bank 219, 228-29.

42) R. King, Gutteridge and Megrah's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8<sup>th</sup> edn (London, Europa Publication, 2001), p.195.

43) 강원진, 전게서, p.264 참조.

44) 동지,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42053 판결.

경우에는 원본서명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취급된다.

사본서류에는 서명이 필요 없으며 신용장에서 “copy of document”를 제시하도록 요구된 경우에,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가 모두 허용된다.<sup>45)</sup> 신용장에서 “in duplicate”, “in two folds” 또는 “in two copies”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복수의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된 경우, 당해 서류 자체에서 달리 표시되지 않은 한, 이 조건은 최소한 1통의 원본 서류와 잔여부수의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충족된다.<sup>46)</sup>

### 3) 서명

서류는 육필, 모사서명(facsimile signature), 천공서명, 스탬프, 상징(symbol), 기타 기계적 또는 전자적 인증방법으로 서명될 수 있다.<sup>47)</sup> 신용장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환어음, 증명서 및 신고서는 본질적으로 서명이 요구되며 운송서류와 보험서류도 반드시 UCP 600의 규정에 따라 서명되어야 한다. 회사의 표제가 있는 용지의 서명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당해 회사의 서명으로 본다.<sup>48)</sup> 은행은 어떤 서류의 진정성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sup>49)</sup> 은행은 서류상의 서명이 UCP600, ISBP745 또는 신용장 자체의 요구에 따라 서명되었는지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뿐이다.

## 2. 서류의 변경 및 정정

신용장조건에 따라 제시된 서류들은 가끔 외견상 그 내용이나 데이터를 변경하고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흔히 불일치를 이유로 거절되었던 서류에 대하여 수익자가 필요한 부분을 변경이나 정정을 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은행은 서류를 정정한 당사자에게 정정사실 인증을 요구한다. UCP600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는 ISBP745를 참조해야 한다. ISBP745에서는 변경과 정정에 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수익자와 제3자가 발행한 서류들은 서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환어음을 제외하고 수익자 자신이 발행한 서류로서 공인, 사증 또는 기타 공증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상의 정정 또는 변경은 인증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인증은 반드시 그 인증을 행한 주체를 표시하고 동 당사자의 서명 또는 약식서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인증이 서류의 발행인 이외의 당사자에 의

45) UCP600 제17조 d항.

46) UCP600 제17조 e항. 원본서류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상세히는, 박세운·허해관, 전게서 pp.67-75 참조.

47) UCP600 제3조.

48) ISBP745 A31, A35-38.

49) UCP600 제34조; *Gian Singh & Co Ltd v Banque de L'Indochine* [1974] 2 Lloyd's Rep 1.

하여 행해졌음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인 증은 동 당사자가 정정 또는 변경을 인 증한 자격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공인, 사증 또는 기타 동종의 인 증된 서류상의 정정 또는 변경은 반드시 그 서류를 공인, 사증 등을 행한 당사자에 의한 인 증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sup>50)</sup> 서류가 복수의 정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각의 정정이 별도로 인 증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인 증이 모든 정정에 적절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sup>51)</sup>

### 3. 언어

신용장에서 특정언어로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예: All documents should be issued in English) 해당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sup>52)</sup> 서류가(특히 제3자가 발행한 서류) 신용장 언어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 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불일치를 이유로 거절될 수 있다. 나아가 신용장에서 둘 이상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도 수리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지정은행은 그 신용장을 통지함에 있어서 신용장에 대한 자신의 확인조건으로서 수리 가능한 언어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sup>53)</sup> *Credit Industriel et Commercial v China Merchants Bank* 사건에서 신용장상의 제시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는데, 이는 프랑스어로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법원은 “신용장상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매입을 위하여 제시되는 서류에만 국한되며 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sup>54)</sup>

### 4. 신용장 금액 및 수량

신용장상의 이용 가능한 최대 금액이 기재되면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sup>55)</sup> 하지만 통상적으로 석유매매를 위한 신용장에는 통상 “수익자는 신용장 금액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수정을 할 필요 없이 당시 시가에 상당하여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다.<sup>56)</sup> 이러한 조항은 신용장상 허용된 금액보다 우선한다.<sup>57)</sup> 지정은행

50) *NEC Hong Kong Ltd v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2006] 2 HKLRD 645.

51) ISBP745 D28-29, E24-25, F22-23.

52) ISBP745 A21.

53) ISBP745 A21.

54) *Credit Industriel et Commercial v China Merchants Bank* [2002] 2 All ER 427. 어음은 발행지국법에 따라 발행지 언어로 작성된다. 굳이 언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포맷은 그대로 두고 기재사항만 요구된 언어로 작성하면 된다.

55) *PT Adaro Indonesia v Rabobank* [2002] 3 SLR 258, 266.

이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 송장을 수리할 수 있다.<sup>58)</sup>

신용장 금액의 신축성을 강화하고 금액수정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UCP600 제 30조에서는 과부족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 금액이나 신용장에서 표시된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about’ 또는 ‘approximately’라는 단어는 그것이 지칭하는 금액, 수량 또는 단가에 관하여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59)</sup> 수량을 포장단위 또는 개별단위의 특정 숫자로 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장에서 청구금액의 총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물품의 수량에 관하여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과부족은 허용된다.<sup>60)</sup> 따라서 만약 어떤 특정수량의 물품을 선적하여야 할 경우, 그 수량은 신용장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5. 신용장상 일자와 서류상 일자

UCP600에는 일자와 관련된 조항들이 많으며 수익자는 특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선 UCP600 제6조 d항 i호에 따른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 이전인가? 다음은 UCP600 제 14조 c항에 따라 원본 운송서류는 선적일 후 21일 이전에 제시되었는가? 마지막으로 선적 마감일은 언제까지이고 서류 발행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 등이다.<sup>61)</sup> 이러한 일자들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며 준수되지 않은 제시에 대하여 은행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제시접수를 하여야 하는 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일이나 최종 제시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유효기일 또는 최종 제시일은 그 다음 첫 은행영업일까지 연장되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는 유효기일 또는 그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sup>62)</sup> 만약 신용장상 최종선적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선적되었음이 표시된 선하증권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선하증권은 불일치한 제시로 간주된다. 최종 선적일을 준수하다보면 실무상 선하증권의 발행일자나 선하증권상 선적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56) 석유매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광물이나 곡물과 같은 일차산품일 경우 대개 이런 식으로 신용장이 발행되어 거래 소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된다.

57)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2006] 1 SLR 565.

58) UCP600 제18조 b항.

59) UCP600 제30조 a항.

60) UCP600 제30조 b항.

61) *Credit Agricole Indosuez v Generale Bank* [2000] 1 SLR 258, 266.

62) UCP600 제6조 c항, 제29조 a항. 만약 제29조 a항에 따라 유효기일이 연장된 경우 지정은행은 개설은행에게 ‘제시는 제29조 a항에 따라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었음’을 진술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UCP600 제3조는 신용장상 일자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해석규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규칙은 ISBP745 A11-15에 의해 보충된다. 환어음,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는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드시 일부(日附)되어 있어야 한다. 상기 언급된 서류 이외의 서류가 일부 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동일한 제시의 부분을 구성하는 다른 서류의 일자에 대한 서류상의 참조에 의하여도 충족될 수 있다.<sup>63)</sup> 신용장은 서류의 최종발행일을 명시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ISBP745는 서류의 작성일자와 이후의 서명일자를 명시하고 있는 서류는 서명일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의 일자로 일부 될 수 있으나 제시일보다 늦은 일자로 일부 되어서는 아니 된다.<sup>64)</sup>

## 6. 비서류적 조건

화환신용장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비서류적 조건이 포함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UCP600 제14조 h항은 “신용장에 어떠한 조건이 들어있으나 그 조건과 일치함을 나타낼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무시한다.”고 규정한다. 본 조항이 보여주는 것은 은행은 비서류적 조건을 무시하기 때문에 신용장 당사자들은 비서류적 조건이 화환신용장에 기재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UCP500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Banque de l'Indochine v JH Rayner (Mincing Lane) Ltd* 사건<sup>65)</sup>을 보면, 신용장상에는 “국제해운동맹 회원선사의 선박에 선적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었지만 어떠한 서류로 이러한 조건을 증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Parker 판사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합리적인 서류로써 증명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비서류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은행에 재량권을 부여하였지만 신용장 당사자들의 일치하는 제시에 대한 기준에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초래시켰다.

이에 UCP500 제13조 c항은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에게 신용장상에 서류를 기재하여야 할 책임을 부가하였다. 따라서 매입은행이나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또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UCP500 제13조 c항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위의 *Banque de l'Indochine* 판례에 UCP500이나 UCP600이 적용되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다. Banking Commission은 UCP500 제13조 c항

63) ISBP745 A11 b.

64) UCP600 제14조 i항.

65) *Banque de l'Indochine v JH Rayner (Mincing Lane) Ltd* [1983] QB 711.

에 대한 Position Paper No.3를 발행하였는데, 본 조항의 목적은 “신용장상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실무상 상이한 대처로 인하여 신용장 고유의 성격과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을 철저히 고치려는데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UCP500 제13조 c항은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틀린 인식을 철저히 바꾸지 못하였다.<sup>66)</sup> 이를 반대하는 주장으로, 신용장상에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면 이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는 신용장상의 명시조건으로서 임의규정인 UCP의 규정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과연 명시조건과 임의규정의 우선순위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답은 일단 긍정적인데,<sup>67)</sup> 그러한 비서류적 조건이 신용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신용장의 명시조건과 UCP 규정이 명백히 상충되는 경우에는 명시조건이 우선하게 된다.<sup>68)</sup>

그렇다면 많은 판례들에서 UCP500 제13조 c항이 무시된 것처럼, UCP600 제14조 h항도 무시되어야 하는가? UCP600 제1조에서는 “이 규칙이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변경되거나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이 그 신용장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이는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UCP500 제1조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이라고 규정함으로써 UCP600과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신용장상 비서류적 조건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UCP600 제14조 h항은 UCP500과 다르게 적용된다. 중요한 것은 신용장의 적절한 이용에 있어서 비서류적 조건의 중요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의 비서류적 조건이 중요할수록 법원은 제14조 h항을 명시적으로 수정해야할지 아니면 배제해야할 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sup>69)</sup>

## IV.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

### 1. 불일치 서류의 거절

UCP600의 주요 개정 내용 중 하나인 제14조 b항은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개설은행은 각각 제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최장 5 은행영업일 내에 일치

66) *Credit Agricole Indosuez v Generale Bank and Seco Steel Trading Inc and Considar Inc* [2000] 1 Lloyd's Rep 123; *Kumagai-Zenecon Construction Ltd(in Liq) v Arab Bank plc* [1997] 2 SLR 805;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2006] 1 SLR 565 사건에서 동 조항을 적용하려다 실패하였다.

67) R. Jack & A. Malek, op. cit., p.181.

68) *Korea Exchange Bank v Standard Chartered Bank* [2006] 1 SLR 565, 579.

69) ICC Banking Commission Official Opinion TA 644 Rev.

하는 제시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제시일이나 그 이후에 유효기일이나 최종 제시일이 도래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단축되거나 달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전신인 UCP500 제13조 b항과 비교해 보면 UCP600 제14조 b항은 두 가지 새로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은행은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5 은행영업일 내에 서류심사를 마쳐야 한다(물론 제16조 d항에 따라 5 은행영업일 내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sup>70)</sup> 이것으로 UCP500 제13조 b항의 ‘서류 수령 익일로부터 7 은행영업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라는 규정을 완전히 바꾸었다. UCP600 제14조 b항은 또한 5 은행영업일이라는 기간은 제시일이나 그 이후에 유효기일이나 최종 제시일이 도래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단축되거나 달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최장 5 은행영업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최장(maximum)’이라는 단어는 ‘거절지연이나 거절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무조건 5 은행영업일 내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장 5 은행영업일 내’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즉 ‘최장 5 은행영업일’은 한층 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 그보다 더 일찍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석되며, 이는 UCP500상 ‘합리적인 기간’을 기초로 해석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UCP600의 Drafting Group의 의도였다면, 개정된 것은 단지 서류심사 및 거절통지에 허용된 7 은행영업일이 5 은행영업일로 단축된 것이며 5 은행영업일은 단지 최장일 뿐이고 그 전에 심사 및 통지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UCP600 제14조 b항과 제16조 d항을 해석해 보면, 거절통지는 반드시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늦어도 5 은행영업일의 종료이전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UCP600의 Drafting Group의 의도가 7 은행영업일을 5 은행영업일로 단축하면서 ‘합리적인 기간’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제14조 b항의 해석은 더 명료해진다. ‘최장’이라는 단어는 UCP500 제13조 b항의 ‘합리적인 기간’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면 은행은 서류가 얼마나 복잡하든 심사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걸렸든지 상관없이 5 은행영업일 내에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은행에 최장 5 은행영업일이 주어졌을 경우’ 최장기간을 적용할지 아니면 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UCP500 제13조 b항에서 무엇이 ‘합리적인 기간’인지 고려할 때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제시된 원본과 사본의 수, 서류상 데이터의 성격 및 복잡성, 서류상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 은행원이 그 기간 동안 처리해야 할 업무량, 은행의 신용장 전담부서의 규모, 영어가 은행원의 모국어가 맞는지 등이다.<sup>71)</sup>

70) UCP600 제2조의 제시(presentation)에 대한 정의는, 신용장하에서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 자체를 의미한다.

UCP600 제14조 b항에 관한 반대의 주장은 5 은행영업일은 확정된 일자라는 것이다. 즉 은행은 5 은행영업일 내에만 서류를 심사하고 거절통지를 하면 이는 거절지체나 거절무효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해석은 일방 당사자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지만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에 대해서는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해석방법이다. 만약 신용장 유효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경우, 은행이 제시일로부터 2 은행영업일 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거절통지를 한다면 수익자는 남은 시간동안 서류를 찾아가서 불일치를 정정하고 이를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에 다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경우 만약 은행이 5 은행 영업일을 모두 사용하여 심사 및 거절통지를 한다면 수익자는 불일치 정정과 재 제시의 기회를 상실할 것이다. 의도적으로 5 은행영업일을 다 채우는 것(이는 증명하기 쉽지 않다)은 일치하는 재 제시를 배제하기 위한 은행의 전략일 수 있다. 다른 문제점은 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판단했었을 시기에 비해 실제로 거절통지를 한 시기 및 5 은행영업일의 가격이 대폭 하락했을 경우, 만약 서류가 2 은행영업일 이내에 거절되었다면 5 은행영업일에 거절한 경우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매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첫 번째 경우에서 수익자는 만약 은행이 짧은 시간 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거절하기로 판단하였다면 5 은행영업일을 다 채우지 않고 거절통지를 할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이에 대한 ICC Banking Commission의 분명한 해석원칙이 있기 전까지 은행에게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해석방식은 5 은행영업일을 ‘최장’이라 생각하고 서류심사와 일치여부결정 및 거절통지는 상황에 맞추어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이행하는 것이다.<sup>72)</sup>

UCP600 제14조 b항은 UCP600 제16조 d항과 함께 묶어서 보아야 한다. 즉 위의 해석은 서류 취급에 관한 이 두 조항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이 해석에 따르면, 최장 5 은행영업일 동안 은행은 서류의 일치여부를 심사하고 거절할지 수리할지를 결정한 다음, 만약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제16조에 따라 거절통지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제14조 b항에 따라 제시일로부터 최장 5 은행영업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16조 d항에 따라 5 은행영업일의 종료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실권효를 규정한 제16조 f항이 적용되어 은행은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UCP500 제14조 d항 i호와는 달리, UCP600 제16조 d항에는 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명시가 없다. ‘지체 없이’를 뺀 이유는 아마도 은행이 서류의 일치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수리할지 거절할지를 결정한 후 만약 거절하기로 결

71) R. Jack & A. Malek, op. cit., p.116-17; *Seaconsar Far East Ltd v Bank Markazi Jomhuri Islami Iran* [1999] 1 Lloyd's Rep 36, 41-42.

72) 즉, ‘최장’의 정확한 해석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고, 다만 ‘합리적인 기간’과 같은 해석을 하거나 ‘확정된 일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은행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5 은행영업일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내에 통지하는 것이 되겠다.

정하였다면 제시일로부터 5 은행영업일의 종료 이전까지 거절통지를 하여야 함에 있어서, 그 보다 더 일찍 통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것이 UCP600 Drafting Committee의 진정한 의도였는지 아니면 단지 실무상의 바람인지는 알 수 없다.<sup>73)</sup>

## 2. 거절통지

지정은행,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서류심사 후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서류의 제시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한 번에 통지하여야 한다. 거절통지에는 UCP600 제16조 c항에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즉,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개설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제시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한 번에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i. 그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사실, 그리고 ii. 그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사유가 된 각각의 하자, 그리고 iii. a) 그 은행은 제시인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b)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의사를 수령하고 이를 수락하기로 동의하거나 권리포기를 수락하기로 동의하기 전에 제시인으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c) 그 은행은 서류를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또는 d) 그 은행은 제시인의 사전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위의 a목부터 d목까지는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서 은행은 거절서류에 대하여 네 가지 처리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은행은 제시인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하거나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의사를 수령하고 이를 수락하거나 권리포기를 하기 전에 제시인으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하거나, 또는 서류를 반환하거나 제시인의 사전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a목이나 b목의 내용을 거절통지에 기재하였을 경우라도 은행은 언제든지 제시인에게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sup>74)</sup> UCP500 제14조 d항에서 은행은 오직 서류를 반환하거나 제시인의 처분권에 일임하여 보관하는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UCP600 제16조 c항 iii호는 은행에 네 가지 선택권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다. 즉, 설사 제시인으로부터 서류처분에 관한 사전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은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거절통지에는 또한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사유가 된 각각의 하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하자를 빠뜨려서 기재하지 못하였다면 은행은 그 하자를 거절사유로

73) J.E. Byme, op. cit., p.149.

74) UCP600 제16조 e항.

주장하지 못한다. 거절통지는 오직 한번만 할 수 있으며 은행은 다른 불일치 사유를 들어 추가 거절통지를 할 수 없다. UCP600 제16조 c항에 따르면 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사실을 꼭 명시할 필요가 있다. UCP500 제14조 d항에 관한 한 판례에서는 은행이 거절사실을 명기하지 않아 제14조 e항의 실권효 조항에 따라 불일치주장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 판례에 따르면 은행이 확실히 서류를 거절하는지의 의사는 충분히 명료해야 한다는 것이다.<sup>75)</sup>

신용장 유효기일 이후에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는 은행은 거절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대세이다. 이에 대해 논자는 UCP600의 관점은 이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제2조 정의 조항을 보면, 일치하는 제시란 신용장조건에 따른 제시를 말한다. 이 정의에 근거하면 일치하는 제시는 서류적조건 뿐만 아니라 유효기일과 같은 비서류적 조건까지도 모두 커버하기에 충분히 광의적이다. UCP600 제16조 a항에서 은행은 제시서류의 일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지 서류적조건의 일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시의 시의 적절성과 같은 기타 조건들도 일치하여야 함을 아우르는 조항이다. 만약 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은행은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만약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제16조 c항에 따라 제시인에 대하여 반드시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거절통지는 원격통신으로, 또는 그 이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sup>76)</sup> 원격통신은 SWIFT 메시지, 텔렉스, 팩시밀리, 이메일 그리고 전화를 포함한다.<sup>77)</sup> 거절통지는 또한 은행에 방문한 제시인의 대리인에게 구두로 할 수도 있다.<sup>78)</sup> 거절통지와 거절사유가 된 하자들은 가능한 서면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례적으로 전화와 기타 통신수단을 결합하여 통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결제를 거절한 개설은행이나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한 확인은행은 본조에 따라 그 취지의 통지를 한 때에는 이미 지급된 상환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sup>79)</sup> 전제는 거절사유가 적절하여야 하고, 또한 제16조의 거절절차에 온전히 따라야 한다.

75) *Bankers Trust Co v State Bank of India* [1991] 2 Lloyd's Rep 443.

76) UCP600 제16조 d항.

77) 이들 가운데 전화 통지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피되고 있는 수단이다.

78) *Seaconsar Far East Ltd v Bank Markazi Jomhuri Islami Iran* [1999] 1 Lloyd's Rep 36, 39.

79) UCP600 제16조 g항.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를 수리하기 전에 결제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이미 지급된 상환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 3. 실권효

제16조 f항은 제16조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았을 경우의 실권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UCP600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대하여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sup>80)</sup> 이러한 경우 관련은행은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 개설 의뢰인이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경우, 관련은행은 지급한 대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관련은행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을 말하며 지정은행은 배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정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결제나 매입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sup>81)</sup> 지정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개설은행의 대리인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개설은행의 대리인인 지정은행이 UCP의 규정에 따라 거절통지를 하지 못하였다면 법률에 따라 개설은행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은 대금을 우선 지급한 후, 지정은행에 UCP 규정을 위반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sup>82)</sup>

제16조 f항의 적용범위는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국한된다. 우선 동 조항은 문면상의 불일치의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예컨대 요구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만약 문면상 일치함이 확인되었더라도 서류가 늦게 제시되었거나 잘못된 주소로 제시되었을 경우 은행은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UCP600의 ‘제시’에 관한 정의는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대한 서류의 인도 또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 자체를 의미한다.<sup>83)</sup> 이를 근거로 보면, 일치하지 않는 제시는 ‘그렇게 인도된 그 서류 자체’가 아닌 것을 말한다. 이때 거절통지에는 ‘서류의 하자’(discrepancies)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고 이러한 하자는 오로지 문면상의 하자만을 가리킨다.<sup>84)</sup>

‘제시’는 또한 넓은 의미로 신용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서류의 인도를 말한다. 따라서 제시만기일 이후에 제시되었거나 잘못된 주소로 제시되었을 경우도 역시 제16조의 위반이 되며, 은행은 거절통지에 ‘서류의 하자’를 기재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거절통지를 할 때 문면불일치든 인도불일치든 모두 상세히 기재하여 제16조 f항의 “주장을 할 수

80) UCP 600 제16조 f항: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대하여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81) J. E. Byrne, UCP 600: An Analytical Commenta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10, p.752.

82) P. Ellinger & D. Neo, op. cit., p.120.

83) UCP600 제2조.

84) Vereinsbank Aktiengesellschaft v National Bank of Pakistan [1997] 1 Lloyd's Rep 59, Amixco Asia (Pte) Ltd v Bank Bumiputra Malaysia Bhd [1992] 2 SLR 943, 947.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일치하는 제시라 하더라도 수익자의 사기(fraud)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비록 제16조상에는 사기행위가 거절사유를 구성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예외원칙이 적용되어, 제16조에 근거한 거절사항의 기재나 통지 등이 없이도 거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기예외는 UCP와 같은 원칙이 아니라 강행법률로써 보장이 되며, 또한 법원은 사기 당사자인 수익자가 은행의 부당한 지급거절을 주장하면서 제16조의 혜택을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sup>85)</sup> 수익자의 사기행각이 없어 사기예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제시된 서류가 위조서류로 밝혀졌지만 사기는 아닌 경우에도 이는 지급거절의 사유가 된다. 왜냐하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진본이며 위조서류는 제16조의 하자요건을 구성하기 때문이다.<sup>86)</sup>

제16조 f항의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만약 은행이 하자서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금반언(禁反言, estoppel)원칙을 수용하기로 선언하였을 경우 역시 “불일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금반언이란 자신의 행위에 의해 그러한 행동을 신뢰할 권리가 있었고 그에 따라 행동한 타인에게 해가 되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거절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역시 은행은 그 서류를 수리한 것으로 취급되어 불일치 주장을 할 수 없다.<sup>87)</sup>

## V. 결 론

신용장상의 서류가 제시되면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개설은행은 제시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 이때 은행은 오직 서류만을 기초로, 서류가 문면 상 일치하는 제시인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물품이나 기초계약 또는 기타 거래관련 사항들은 심사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은행은 제시서류의 형식·충분성·정확성·진정성·위조여부 또는 법적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은행의 서류심사의무를 문면 상 일치로 제한한 것은 UCP600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신용장거래의 독립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시서류는 신용장조건과 반드시 엄격히 일치하여야

85) Floating Dock Ltd v Hong 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 [1986] 1 Lloyd's Rep 65.

86) J. E. Byrme(각주 91), op. cit., p.754에서도 은행의 거절사유로 discrepancy 외에 권리남용, 사기 또는 위조서류의 제시(abuse, fraud, forgery) 등을 언급했다.

87) 김용일,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6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11, pp.55-56 참조.

하며, 상당히 일치하거나 신용장조건과 그 역할 면에서 동등하면 된다는 등의 융통성이 없다. 엄격일치 원칙의 특별한 측면으로, 제시서류들은 문면 상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제시된 모든 서류들이 반드시 같은 거래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각 서류는 다른 서류들과 문면 상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불일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이다.

서류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은 원본의 인정 여부, 서류의 변경 및 정정, 언어 등이다. 신용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서류는 원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Glencore International AG v Bank of China* 사건과 *Kreditbank Antwerp v Midland Bank plc* 사건에서 원본과 사본의 효력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서류의 변경 및 정정에 관하여, 서류가 복수의 정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각의 정정이 별도로 인증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인증이 모든 정정에 적절한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끝으로 신용장에서 특정언어로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해당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서류불일치에 따른 은행의 조치에 대하여는 불일치 서류의 거절, 거절통지, 실권효를 검토하였다. 먼저 최장 5 은행영업일 동안 은행은 서류의 일치여부를 심사하고 거절할지 수리할지를 결정한 다음, 만약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면 UCP600 제16조에 따라 거절통지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제14조 b항에 따라 제시일로부터 최장 5 은행영업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16조 d항에 따라 5 은행영업일의 종료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실권효를 규정한 제16조 f항이 적용되어 은행은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거절통지에는 또한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사유가 된 각각의 하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하자를 빠뜨려서 기재하지 못하였다면 은행은 그 하자를 거절사유로 주장하지 못한다. 거절통지는 오직 한번만 할 수 있으며 은행은 다른 불일치 사유를 들어 추가 거절통지를 할 수 없다. 요컨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UCP600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대하여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관련은행은 일치하는 제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원진, “UCP600 상의 불일치서류의 권리포기 요건과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7.
- , 「신용장 분쟁사례」, 두남출판사, 2013.
- 김용일, “수익자의 일치하는 제시에 따른 개설은행의 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6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11.
- 김종철,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물품명세의 일치성 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 박세운 “신용장과 청구보증서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 박세운·허해관,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745 -공식 번역 및 실무가이드-」, 대한상공회의소, 2013.
- 이천수,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의 거절통지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 채동현,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하에서 운송서류에 대한 심사”, 「국제거래법연구」, 제17권 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2008.
- 한재필, “UCP600에서의 서류심사표준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 Byrne, J.E., *The Comparison of UCP600 & UCP500*,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07.
- , *The Originals Controversy: From Glencore to an ICC Decisi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1999.
- , *UCP 600: An Analytical Commenta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2010.
- Downes, P., “UCP 600: not so strict compliance,”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Vol.22 No.4, 2007.
- Ellinger, P.,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their development and the correct revisions*, *LMCLQ* 152, 2007.
- Ellinger, P. & Neo, D.,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Oxford &

Portland, 2010.

Hang, Y. L., "UCP 600: the new rules on documentary compli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Management*, Vol.52 No.3, 2010.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CC Publication No.745, 2013.

King, R., *Gutteridge and Megrah's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8<sup>th</sup> edn., London, Europa Publication, 2001.

## ABSTRACT

## A Study on the important issues of Documents Examination in the L/C Transactions

Yong-Il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nks's Examination of Documents in the L/C Transactions. Most of all, this article deals with one of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law on documentary credits, namely, the compliance of documents present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letter of credit. In addition, the general principles of strict compliance will be considered and in the next, the requirements of specific documents such as invoices, transport documents and insurance policies.

This area of letter of credit law is shaped not only by judge-made decisions but also the articles of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 Publication No.745) prepared by the Banking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s well as the position papers and opinions of the latter.

Whether a document complies with the terms of a letter of credit is essentially a matter of examination and construction of the document in question against the terms of the letter of credit under which it is presented, articles of the UCP, ISBP as well as the opinions and statements of the Banking Committee. Most of all this article was focused on provisions of UCP600. Comparison with provisions of UCP500 have been drawn where appropriate.

**Key Words** : UCP600, ISBP Publication No.745, Banking Committee, Banks's Examination of Documents.

---

\* Assistant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